

## MARPOL 부속서 5장 개정 상세 (Res. MEPC. 277(70))

### [Regulation 4]

#### ① Reg. 4.1.3 (Replaced)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하역방법을 통하여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 해리. 이러한 화물잔류물은 동 부속서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해양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된 어떠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② Reg. 4.3 (Newly added)

SOLAS VI장 1-1.2규칙에 정의된 곡물을 제외한 고체산적화물은 동 부속서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 화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③ The existing paragraph 3 is renumbered as paragraph 4. (기존의 4.3는 -> 4.4로 변경됨)

### [Regulation 6]

#### ① Reg. 6.1.2.1 (Replaced)

화물창 세정수 내 포함된 동 부속서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해양환경은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 화물 잔류물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 ② Reg. 6.1.2.2 (Newly added)

SOLAS VI장 1-1.2규칙에 정의된 곡물을 제외한 고체산적화물은 부록 1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 화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항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는 IMSBC Code 4.2.3항을 참고 바라며, 그렇지 아니한 선박은 주관청이 정한 바에 따라 기타 선언 수단이 이용 가능함.

#### ③ Reg. 6.1.2.3 (Newly added)

화물창 세정수 내 포함된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분류된 세정제 또는 세정 첨가제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The existing paragraphs 6.1.2.2 to 6.1.2.4 are renumbered as paragraphs 6.1.2.4 to .6. (기존의 6.1.2.2~.4는 -> 6.1.2.4~.6으로 변경됨)

⑤ Reg. 6.1.2.6 (Renumbered and replaced)

이 항의 상기 [2.1부터 2.5](#) 항의 조건들이 만족되었다면, 잔류물을 포함하는 화물창 세정수의 배출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행해져야 하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산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Regulation 10]

① Reg. 10.3 (Replaced)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협약의 타 당사국의 영해내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의 항해에 종사하는 승선인원 15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모든 선박과 고정식 또는 부유식 플랫폼은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기록부는 본선의 공식 항해 일지의 일부 또는 다른 기록부로 될 수 있으며 이 부속서의 부록 [2](#)에서 명시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② Reg. 10.3.2 (Replaced)

동 부속서 제 4, 5, 6규칙 또는 극지코트 PartII-A 5장의 5.2항에 따른 해양으로의 배출 시마다 일자, 시간, 선박의 위치(위도 및 경도), 폐기물의 범주 및 배출된 추정량(M<sup>3</sup>)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한다. 화물잔류물의 배출은 시작 및 종료위치가 상기 내용에 추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③ Reg. 10.3.3 (Newly added)

소각 완료 시마다 기록은 일자, 시간, 소각을 시작 및 정지시점에서의 선박의 위치(위도 및 경도), 소각된 폐기물의 범주 및 범주별 소각된 추정량(M<sup>3</sup>)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Reg. 10.3.4 (Newly added)

타선박 및 수용시설로의 배출 시마다 기록은 배출 일자 및 시간, 배출시설 또는 선명, 배출된 쓰레기 범주, 각 범주별 배출된 (M<sup>3</sup>)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Reg. 10.3.5 (Renumbered from 10.3.3 to 10.3.5 and replaced)

폐기물 기록부는 수용시설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함께 본선 또는, 고정식 또는 부유식 플랫폼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위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Reg. 10.3.6 (Renumbered from 10.3.4 to 10.3.6 and replaced)

이 부속서의 7규칙에 언급된 폐기물의 어떠한 배출 또는 손실사고 발생 시 손실 또는 배출이 일어난 일자, 시각, 항구 또는 선박의 위치 (위도 및 경도 및 알 수 있다면 수심), 사유, 배출 또는 손실된 폐기물의 범주, 각 범주별에 대한 추정량 및 일반사항을 폐기물 기록부에,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본선의 공식 항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Appendix I] (Newly added)

Appendix I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solid bulk cargoes as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1 동 Annex의 목적으로, 화물잔류물이 다음의 매개변수<sup>1</sup>를 만족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 시스템(UN GHS)의 요건에 따라 분류된 고체산적물질의 잔류물이면 해양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up>1</sup>

- .1 급성 수생 유독성 범주 1; 그리고/또는
- .2 만성 수생 유독성 범주 1 또는 2; 그리고/또는
- .3 급격하게 분해되지 않고 높은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질과 결합된 발암성<sup>2</sup> 범주 1A 또는 1B; 그리고/또는
- .4 급격하게 분해되지 않고 높은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질과 결합된 변이원성<sup>2</sup> 범주 1A 또는 1B; 그리고/또는
- .5 급격하게 분해되지 않고 높은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질과 결합된 번식독성<sup>2</sup> 범주 1A 또는 1B; 그리고/또는
- .6 급격하게 분해되지 않고 높은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질과 결합된 노출이 반복된 특정 표적 기관 독성<sup>2</sup> 범주 1
- .7 합성고분자, 고무, 플라스틱, 플라스틱 원료 알갱이를 포함하거나 구성된 고체산적화물

1 그 기준은 UN GHS에 기반을 두고 있음. UN GH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물질(금속 및 무기 금속 화합물) 지침에 대해서는 부속서 6 및 10의 분류 및 기준의 적절한 해석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발암 성, 변이원성, 번식 독성 또는 특정 표적 기관 독성 반복 경구 및 피부 유해성에 대한 노출 또는 유해 위험 성명서에 노출 경로 상세가 없는 제품.

[Appendix II] (Renumbered and replaced)

Appendix II Form of Garbage Record Book

3. 폐기물 종류

폐기물 기록부(또는 본선의 공식항해일지) 1부 및 2부의 기록 목적상 폐기물은 다음의 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1부 (Part I)

- A 플라스틱
- B 음식물 쓰레기
- C 생활 쓰레기
- D 식용유
- E 소각재
- F 운항상 쓰레기
- G 동물 사체
- H 어구

I 전자 폐기물

2부 (Part II)

J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

K 해양환경에 유해한 화물 잔류물

RECORD OF GARBAGE DISCHARGES

PART I (replaced)

For all garbage other than cargo residues as defined in regulation 1.2 (Definitions)

Ship's name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number
-------------	-------------------------------	------------

Garbage Categories

<u>A-Plastics</u>	<u>B-Food wastes</u>	<u>C-Domestic wastes (e.g. paper products, rags, glass, metal, bottles, crockery etc.)</u>			
<u>D-Cooking oil</u>	<u>E-Incinerator ashes</u>	<u>F-Operational Wastes</u>	<u>G-Animal Carcasses</u>	<u>H-Fishing Gear</u>	
<u>I-Electronic Waste</u>					

Operational discharges under MARPOL Annex V regulations 4 (Discharge of garbage outside special areas), 5 (Special requirements for discharge of garbage from fixed or floating platforms) or 6 (Discharge of garbage within special areas) or chapter 5 of part II-A of the Polar Code

Existing							
<u>Date/Time</u>	<u>Position of the Ship/Remark (e.g. accidental loss)</u>	<u>Category</u>	<u>Estimated Amount Discharged or Incinerated</u>	<u>To sea</u>	<u>To Reception Facility</u>	<u>Incineration</u>	<u>Certification/Signature</u>
/							
New table layout							
<u>Date/Time</u>	<u>Position of the Ship(latitude/longitude) or port if disposed of ashore or name of ship if discharged to another ship</u>	<u>Category</u>	<u>Estimated Amount Discharged</u>		<u>Estimated amount incinerated (m<sup>3</sup>)</u>	<u>Remarks: (e.g. start/stop time and position of incineration; general remarks)</u>	<u>Certification/Signature</u>
			<u>Into Sea (m<sup>3</sup>)</u>	<u>To reception facilities or to another ship (m<sup>3</sup>)</u>			
/	:						

Exceptional discharge or loss of garbage under regulation 7 (Exceptions)

<u>Date/Time</u>	<u>Port or position of the ship (latitude/longitude and</u>	<u>Category</u>	<u>Estimated Amount Discharged(m<sup>3</sup>)</u>	<u>Remarks on the reason for the discharge or loss and general remarks (e.g. reasonable precautions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ischarge or</u>	<u>Certification/Signature</u>

	<u>water depth if known</u>			<u>accidental loss and general remarks</u>	
<u>/:</u>					

Master's signature: \_\_\_\_\_ Date: \_\_\_\_\_

PART II (Newly added)

For all cargo residues as defined in regulation 1.2 (Definitions)

(Ships that carry solid Bulk cargoes)

<u>Ship's name</u>	<u>Distinctive number or letters</u>	<u>IMO number</u>
--------------------	--------------------------------------	-------------------

Garbage Categories

<u>J-Cargo residues (non-HME)</u>	<u>K-Cargo residues (HME)</u>
-----------------------------------	-------------------------------

Operational discharges under regulations 4 (Discharge of garbage outside special areas) and 6 (Discharge of garbage within special areas)

<u>Date/Time</u>	<u>Position of the Ship(latitude/longitude) or port if disposed of ashore</u>	<u>Category</u> HME Yes/No	<u>Estimated Amount Discharged</u>		<u>Estimated amount incinerated (m3)</u>	<u>Start and stop positions of the ship for discharges into the sea</u>	<u>Certification/Signature</u>
			<u>Into Sea (m<sup>3</sup>)</u>	<u>To reception facilities or to another ship (m<sup>3</sup>)</u>			
<u>/:</u>							

Master's signature: \_\_\_\_\_ Date: \_\_\_\_\_